

2023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 추진실적

“2023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 추진실적”을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 제5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.

1 총괄

[자치단체 납세자보호관 업무실적]

(단위: 건, %, 천원)

구분	처리건수			인용(시정)률	감세액
	소계	인용(시정)	인용(시정)불가		
총계					
고충민원					
권리보호 요청					
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	1건	1건	0건	100%	
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	4건	3건	1건	75%	
편의시책	3건				
세무상담	3건				

2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

- 지방세 징수유예 : 재산세 1건
- 지방세 체납처분유예 : 담배소비세 2건

3 권리보호 요청

- 찾아서 안내하는 납세자 보호 업무 추진
 - 서민주택 취득자 중 지방세를 과다 납부하거나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납세자를 찾아 안내하고 기납부한 지방세 환급 추진
 -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취득세를 신고한 납세자 중 시가표준액 산정과 정에서 1구의 연면적이 85㎡ 이하인 단독주택의 경우 5~10% 감산을

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감산 적용을 받지 못한 경우 기납부한 취득세 환급 추진

※ 환급 대상자의 계좌 파악 후 직권 환급 : 74건, 567만원

- 상시거주 할 목적으로 서민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만 취득세를 감면신청 하지 않은 경우 감면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을 안내

※ 안내문 발송하여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환급 : 3건, 94만원

- 도시지역 85㎡이하, 도시지역 외 지역 100㎡이하 주택 취득세 부과 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적용이 되지 않아 세금을 과다 납부한 납세자에게 기 납부한 지방세 환급 추진

※ 환급 대상자의 계좌 파악 후 직권 환급 : 71건, 430만원

4] 세무상담

- 지방세 납기연장 또는 징수유예 가능 여부, 지방세 세율 적용 방법 등 지방세 전반에 대한 세무상담 실시